#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052

발의연월일: 2022. 6. 20.

발 의 자:권칠승·고용진·김의겸

김정호 · 김철민 · 김태년

김회재 · 도종환 · 이용우

이워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협동화실천계획의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 공사를 수반한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승인의 처리기간은 시행규칙상 4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처리기간 내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 처리 업무의 지연으로 신청인의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제기됨.

이에 협동화사업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 기간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간 내 처리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기업활동 및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법률 제 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인·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 청인에게 통하여야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 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
		<u>항에 따른 승인·변경승인의</u>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
		<u>지하여야 한다.</u>
<u>&lt;신 설&gt;</u>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
		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
		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u>것으로 본다.</u>
<u>③·④</u> (생 략)		<u>⑤</u> ・ <u>⑥</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